

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-53호

「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」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.

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



1. 항만명 : 여수항, 광양항
2. 항만시설명 : 원료&CTS부두, 제품·로로·고철부두, 중마일반부두, 컨테이너부두, 율촌일반부두, 낙포부두, 중흥부두, 제2중흥부두, 석유화학부두, 여수국제여객부두, 낙포석탄부두, 현대제철부두 등 12개 항만시설
3.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
 - 선박보안료 : 5원/톤
 - 여객보안료 : 출항여객 200원/인당(6세미만 징수안함)
 - 화물보안료 : 액체화물 8원/10배럴
컨테이너화물 145원/1TEU
일반화물 7원/톤
4.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시기 :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
5.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자
 - 상호 : 여수광양항만공사
 - 주소 :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번지(월드마린센터). 끝.